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에너지 소외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63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 소외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3
2.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1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2일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에너지 소외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은 읍·면·동단위의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한 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제16조의8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8.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u>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u> 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이용 소외지역</u> -----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 ③ 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 -----. ⑤ 제2항 및 제3항----- -----. -----. 제16조의8(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3.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현행	개정안
	<u>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말한다.</u> <u>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u> <u>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u> <u>4.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u> <u>5.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⑤ <u>국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⑦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¹⁾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1)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복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발급²⁾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환경 및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항목
가구특성	• 지역, 가구원 현황, 경제적 상황, 장애 유형, 건강 상태 등
주택특성	• 주택 형태·구조, 준공년도, 건축년도, 면적, 리모델링 여부 등
에너지소비현황	•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및 지출액 등
냉·난방현황	• 주·보조 냉·난방설비 및 연료, 실내 유지온도, 취사설비 및 연료 등
생활여건	• 집세·공과금·공교육비 연체 및 폭염·한파·단수·단전 경험 등
지원제도	• 지원제도 이용 여부, 지원금액, 만족도, 추가 필요지원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등)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요금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 제고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액은 4,940억 2,700만원임.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정책은 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별 에너지 취약 요인과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토연구원³⁾은 현행 에너지 빈곤 대책이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하는 공간적 배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뒤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장소기반의 에너지 회복탄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배제 요인]

구분	영향 경로
에너지 저효율 주택 밀집	- 에너지 저효율 주택 밀집→에너지 손실 증가→과도한 에너지 지출 또는 쾌적성 포기→에너지 빈곤 심화
대중교통 접근·이용 불편	- 대중교통망 접근·이용 불편→교통비 지출 증가→가처분 소득 압박→에너지·필수재 소비 자가 제한→에너지 빈곤 심화
에너지 인프라 접근 취약	- 도시가스 등 저비용 에너지 접근성 취약→고비용 에너지 의존 심화→가처분 소득 감소→에너지 빈곤 심화
사회적 교류 인프라 부족	- 정보 교류 및 소통 공간 부족→지원 제도 미인지→에너지 이용권 수급 및 주택 성능개선 기회 상실→에너지 빈곤 심화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3) 구형수,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뒤편,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1048, 2026.1.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도내 에너지 이용 취약마을(도시가스 미공급 등) 및 아파트 대상으로 에너지자립 모델을 통합 추진하여 주거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사업내용		- 도내 마을 및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마을형) 도 30%, 시·군 40%, 자부담 30% (아파트) 도 30%, 시·군 30%, 자부담 40%
신청자격		-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마을형의 경우 마을법인(10세대 이상), 아파트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세대, 단지) 등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지사 소재 기업 *** 아파트 태양광의 경우, 사업 대상 선정 전 또는 후 업체 선정 가능
세부 사업유형	마을형(자립형)	- 신청용량: 주택(3kW) 및 소규모 상업용(10~99kW) - 대상부지: 주택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 지원목적: 세대 전기료 절감 및 마을 공동기금 창출 - 지원대상: 에너지(전기·난방) 이용 취약마을(10세대 이상)
	마을형(소득형)	- 신청용량: 중·대규모 상업용(100~1,000kW) - 대상부지: 개인·마을·농지·공공 부지 또는 건물 - 지원목적: 햇빛소득 창출 - 지원대상: 에너지(전기·난방) 이용 취약마을(10세대 이상)
	아파트형	- 신청용량: 옥상형(단지당 최대 120kW) 및 베란다형(가구당 최대 1kW 미만)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축 아파트단지

자료: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모집 공고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의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등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문제를 인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안 제2조제7호의3 (정의)		-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 제16조의2제2항제3항 (실태조사)		- 읍·면·동 단위의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공공기관의 장 추가
안 제16조의8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	지정 요건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
	지원 사업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 -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 -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절차 등	-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 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지원사업 추진시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보조 가능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개념 및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공급설비의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정 여부가 가지는 정책적·재정적 효과가 적지 않으므로, 어떠한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은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제도상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은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밀집도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그 개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⁴⁾ 등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읍·면·동 단위 실태조사의 경우 행정비용 대비 정책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분포,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공급설비의 보급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는바, 전국 단위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⁵⁾이 발생할 수 있음.

4) 일례로, 국토연구원의 앞의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구분을 위해 유럽연합의 2M, M/2 추정방법을 활용해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비 지출 비중이 과도한 지역(지출 부담형)과 경제적 사유로 에너지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지역(소비 축소형)을 구분하여 에너지 빈곤 지역을 식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서 저소득 지역은 읍·면·동의 균등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체의 하위 15% 이하인 지역을 의미함.

5) 일례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에너지실태조사의 사업비(기후부)는 약 20억원인 반면, 읍·면·동 단위로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복지부)의 경우 170억원 가량이 소요됨.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적 효과와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개념도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법률에 정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타 법률⁶⁾에서 시행근거를 두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에 대한 근거를 「에너지법」에 추가로 둘 경우 법령 간 충돌 및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2.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9(에너지 빈곤 관련 정보의 공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정보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에너지 빈곤 관련 정책의

현행	개정안
	<u>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절차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주거환경, 복지수급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⁷⁾가 있으나,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발굴 및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정보시스템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하고 있음.

8) 일례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효과적인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가구별 에너지소비, 에너지효율 등급, 소득수준, 주거 형태 등 관련 기초 데이터 및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각 부처가 보유한 에너지 빈곤 관련 정보가 제한적⁹⁾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등 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9)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정보 부재(국토부), 등유·LPG·연탄 등 非네트워크 에너지원의 정확한 사용량 통계 확보 곤란(기후부·산업부) 등